

『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과 국민화합 도모, 세계가 함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 기반강화와 국가 브랜드 가치향상에 기여하고, 저개발국가에 대한 문화적 지원을 통해 국제적 선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구미시 상모·사곡동 일원에 조성하고자
-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함.

3. 주요내용

☐ 공원·녹지계획(변경)

- 문화공원(새마을운동 테마공원) 1개소 신설
 - 위 치 : 구미시 상모·사곡동 일원
 - 면 적 : 0.245km²

- 목 적 :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조명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 기반 강화, 저개발국가에 대한 문화적 지원을 통해 국제적 선린관계를 구축하여 구미의 세계적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<공원계획 지표>

구 분	2003	2010	2015	2020	비 고
인구(인)	360,221	450,000	500,000	550,000	
공원 면적률(%)	2.27	3.57	4.00	4.33	근린공원 기준
1인당 공원면적(m ²)	38.86	48.91	49.34	48.49	근린공원 기준
근린공원(개소)	28	33	36	39	
어린이공원(개소)	144	155	160	173	
묘지공원(개소)	1	2	2	2	
체육공원(개소)	—	1	1	1	
수변공원(개소)	1	1	1	1	
문화공원(개소)	—	—	1	1	상포사곡동 일원 신설 (0.245km ²)
유원지(개소)	—	1	1	2	

4. 관련근거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1조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
-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

5. 검토의견

- 본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(안)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, 경상북도지사가 구미시 사곡동 산33-2번지 일원에 245,000㎡ (약7만4천평) 규모로, 2011년부터 2015년(5년간) 까지 문화공원 (새마을운동테마공원)을 조성하여,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과 국민화합도모, 국가의 정체성 기반강화와 국가브랜드 가치향상에 기여코자 조성하려는 사업임.
-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, 신설규모가 100,000㎡이상인 사업은,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「공원」 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계획절차를 이행하여야 함.
- 또한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)에 의하면,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도시공원은 ①생활권공원(소공원, 어린이공원, 근린공원)과 ②주제공원(역사, 문화, 수변, 묘지, 체육 등) 으로 분류 하고 있음.
- 본 지역은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, 교육을 목적으로 기능면에서 문화공원으로서 구미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문화공원 1개소를 신설하는 행정계획이므로,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.
- 아울러,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임.